

『울산광역시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- 가. 제 출 일 자 : 2016. 11. 11.(월)
- 나. 제 출 자 : 김경환 의원 외 5명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6. 11. 16.(목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6. 11. 21.(화)

2. 제안이유

-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개선사항 통보 관련 조항 개정과,
- 조례입법의 기술, 합법성 등의 원칙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부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제명 변경 : 조례제정의 당연규정에 따라 제정한 조례로 “관한” 삭제
- (개정)울산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
- 결산검사위원 정수 명확하게 규정(안 제2조)
- (현행) “3인이상 5인이하” ⇒ (개정) “3명”
- 검사업무 보조에 관한 사항 신설 (안 제9조)
- 조 제목 변경 및 지급주체 명시 (안 제10조)
- (현행) 수당의 지급 ⇒ (개정) 실비보상
- 결산검사를 통하여 알게 되는 기밀누설 엄수 사항 신설 (안 제11조)
- 그 외, 조례입법의 기술, 합법성 등의 원칙에 따른 개정안
- 안 제1조, 안 제3조~안 제8조, 안 제12조

4. 근거법령

- 지방자치법 제134조(결산)
-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(검사위원선임)

※ 법제처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 확정통보

5. 검토의견

-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개선대상인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, 결산검사 업무보조에 관한 사항 신설과 수당지급 항목을 실비로 보상하게 하고 지급주체를 명시하는 것과,
- 결산 검사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기밀사항을 엄수토록 하는 안을 신설하였으며, 그 외 조례입법의 기술, 합법성 등의 원칙에 따라 조례안 및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,
- 입법예고 등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6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

※ 참고사항

- 입법예고 : 2016. 11. 11. ~ 11. 17.(7일간), 의견 없음.